

기업지배구조 _ 감사위원회 구성/위원 선임 절차 _ map 1/4

1. 감사위원회 구성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득한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 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감사업무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①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거나 또는 감사/감사위원 유경험자를 이사협회, Search Firm, 이와 유사한 전문 기관 등의 Pool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물색한다.
- ② 감사위원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 물색하여 동 자문단 회의를 통하여 재적 자문단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단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외이사/감사위원 수의 2배 이내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③ 자문단은 추천한 감사위원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자로 통보한다.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라 한다)는 자문단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통보 한다.
- ⑤ 이사회는 사추위가 추천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자 적격성을 검증하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높고 감사업무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선임 한다.
- ⑥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 권한 및 기능

-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 내부 감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요청권
 -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4. 감사위원회 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개최

감사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시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회의 회사 업무 접근성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8. 감사위원회 자신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 한다.

9.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

감사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10. 감사위원회 협조 기구 조직

- 1) Audit팀
- 2) Accounting팀
- 3) 내부통제팀
- 4) 필요 시 기타 조직